속초시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

1.5단계 방역조치

▲ 공통사항 : ① 마스크 착용, ② 출입자 명단 관리, ③ 환기·소독 등 수칙 의무화

중점관리시설

유흥시설 5종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▲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

※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 등

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- 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

노래연습장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- ▲음식 섭취 금지

실내스탠딩공연장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▲음식 섭취 금지

식당·카페(50㎡ 이상)
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- ▲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(뷔페의 경우)
- ▲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시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
일반관리시설

결혼식장, 장례식장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목욕장업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영화관, 공연장
-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

PC방
-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오락실·멀티방 등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실내체육시설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- ▲음식 섭취 금지

학원, 직업훈련기관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
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▲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
놀이공원·워터파크
- ▲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

이·미용업
- 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
상점·마트·백화점
- ▲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 (300㎡ 이상)

국공립시설
- ▲50% 인원 제한

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사회복지시설 ▲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

모임·행사
- ▲500명 이상 모임·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- ▲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의 4종 모임·행사 100인 미만 제한

종교활동
- ▲정규예배·미사·법회, 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
- ▲모임·식사 금지